

감사청구심의회 2023년 제4차 회의록

1. 일 시	2023. 12. 22.(금) 15:30~17:40
2.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3.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위원장: 최기정○ 위원: 5명(양나래, 양지인, 이혜련, 김상범, 주용학)○ 간사: 박홍권 시민감사팀장○ 관계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11명- 관계공무원: 4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정책조정팀장 정경자 외 1명▶ 도봉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 김정숙 외 1명
4.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와 같이 결정하고, 별첨과 같이 “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주용학 

1. 위원장 개회 선언

2. 간사 성원보고: 전체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출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8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3항에 의거 성원 충족(※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3. 안건 심의

(안건 설명) 제2023-4호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의견진술] 청구인 대표,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

[발언요지]

- ○○○ 위원

- 구청에서 각 동에 보낸 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추천 인원 동별 반장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동별 반장 3명은 반드시 추천이 되어야 된다로 해석될 것임.
반장 등 3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중에 반장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의가 없겠지만 반장 3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동장한테 반장 3명을 지명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납득할 수 없음.

- ○○○ 위원

- 저도 큰 틀에서는 이게 관치나 그런 건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처리 가 미숙하고 문제점들이 있음.

공문 내려보낼 때 반장 3명이라고 명시하여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음.

-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동별 추천을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을 해야지 평가 토론회에서 3명이라고 논의했어도 동별 추천을 3명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음.

두 번째 조례 정의에 보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정의 예산 과정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결산 과정이 들어가야 하므로 결산 시 주민 의견 받아서 하여야 함.

○ ○○○ 위원

- 명문이라든지 절차 조례로 제정됐으면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국장, 구청장에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느슨하게 하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서대문구 담당과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현저히 해
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각하 의견을 제시함.

○ ○○○ 위원

-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기타 의견은 같음.

[심의결과] “각하”(수리: 2, 각하: 4)

[안건 설명] 제2023-5호

○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의견진술] 청구인 대표, 도봉구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

[발언요지]

○ ○○○ 위원

- 민간 위탁을 하였을 때 몇 억 이상의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 외부 회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봉구는 예산 규모가 거의 50~60억임에도 2016년에 받고 몇 년 동안은 외부 회계 검증이 없었으며, 이 정도 규모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도 외부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임.
- 청구인들 주장을 들어보니 감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고, 정산이라는 것이 영수증과 그 금액을 대조하는 작업이라서 단순해 보이겠지만 법에서 외부 회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취지는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으라는 뜻으로 외부 회계 검증을 받지 않고 도봉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를 50개 구매해서 50개를 나눠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25개만 나눠줬고, 서류상으로는 50개를 다 한 걸로 이미 계산서는 발행됐고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럼 공무원들은 50개가 계산서로 발행이 됐으니까 맞네라고 정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은 못 받았고 업체에서 속인 것으로 그것을 공무원들이 겸증 못하니까 외부에 맡겨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

○ ○○○ 위원

-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3개 사 3년 전체 예산이 287억, 연 100억 정도 되는데 3개 사로 나누면 1개 사별 98억, 87억, 102억이고, 3년으로 나누더라도 몇십억씩 되고 있음.
- 그런데 이 3개 사에서 이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안 줬다고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하니까 부풀리기식 증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인이 사용해야 할 걸 4인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숫자만 맞추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일일이 체크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음.
- 수리에 동의하며, 이 부분은 한번 감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위원

- 구청 의견을 들어보니 구청은 우리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회계 문제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청구인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구청 직원 한두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음.
- 회계감사를 표본으로 먼저 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나머지 24개 구청을 추가로 감사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겠음.

○ ○○○ 위원

- 이 건은 회계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회계감사를 하면 사실은 회계는 그냥 맞춰

놓을 수 있고, 회계사들이 봐도 100% 알 수는 없는데 실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내용과 관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소 용역은 25개 구청이 다 똑같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다른 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임.
- 서울시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음.

[심의결과] “수리”(수리: 6, 각하: 0)

4. 위원장 폐회 선언

작성자 : 간사 박 흥 권 